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5771 손해배상(국)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7,819,412원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시 B 임야 46,955㎡에 대한 2017년 재산세를 제외한 6,605,000원(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하여 반환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인 ○○○시 B 임야 46,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나, 2022. 4. 11. ~ 4. 20. ○○도합동조사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토지)가 2022년 과세 또는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알림을 발송하였고, 2022. 5. 10. 원고에게 2017년도 재산세(토지) 1,011,860원, 지방교육세 202,370원 합계 1,214,230원을 부과·고지하고, 2018년도 재산세(토지) 1,028,830원, 지방교육세 205,770원 합계 1,234,600원, 2019년도 재산세(토지) 1,052,560원, 지방교육세 210,510원 합계 1,263,070원, 2020년도 재산세(토지) 1,068,290원, 지방교육세 213,660원 합계 1,281,950원, 2021년도 재산세(토지) 1,174,170원, 지방교육세 234,840원 합계 1,409,010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하였고, 2022. 5. 13.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 C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위한 소요비용 290,000원을 입금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7.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9. 14. ○○○시 D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9. 14. ~ 2032. 9. 13.(10년간) 기간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숲 가꾸기)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22. 9. 22. 원고의 재산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분) 해당 금액은 1,636,968원이고, 임야분리과세세율 적용시 예상 세액은 220,416원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원고는 2022.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1,636,968원을 포함한 재산세 등 합계 2,573,2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9. 29. 피고에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7,819,412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17년도부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착오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경정하여 다시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원고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부과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6,605,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사,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청구를 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7,819,412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17년도부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착오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경정하여 다시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원고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부과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7,819,412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준보전산지 중 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4,164.82㎡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보전산지, 2,493.18㎡는 준보전산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 7. 1. C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위한 소요비용 290,000원을 입금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의뢰한 사실, 2022. 9. 14. 남양주시 D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9. 14. ~ 2032. 9. 13.(10년간) 기간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숲 가꾸기) 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숲 가꾸기) 인가를 받기 이전인 2017년도부터 2022년도(과세기준일 2022. 6. 1.)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피고가 잘못 분리과세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최○○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2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끝.